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0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4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806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7. 11. 10.
판 결 선 고	2017. 12. 1.

주 문

1. 피고가 2016. 4. 12. 원고에게 한 취득세 20,350,700원, 농어촌특별세 2,035,070원, 가산세 7,018,3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0

가. 원고는 1995. 6. 14. 주식회사 B(이하 '이 사건 회사'라 한다)를 설립하였고,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.

나.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(3,000주, 30%), C(500주 5%), D(800주, 8%), E(1,000주, 10%), F(200주, 2%), G(500주, 5%), H(2,000주, 20%), I(2,000주, 20%)로 기재되어 있다가 2014년 12월경 원고(9,500주, 95%), C(500주, 5%)으로 변경되었다.

다. 피고는 원고와 특수관계인(C, D, E)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3%를 소유하다가 2014년 12월경 원고와 C(원고의 배우자)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%를 소유하게 되어 소유 주식 47%가 증가하였으므로,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등을 47%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이유로, 2016. 4. 12. 원고에게 취득세 20,350,700원, 농어촌특별세 2,035,070원, 가산세 7,018,330원을 부과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2, 8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관계 법령
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3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인정 사실

1)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무렵에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했다[구 상법(1995. 12. 29.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88조].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이자 주주의 현황은 위 1. 나.의 기재와 같고, 그 주주들은 원고의 지인이거나 친인척(처, 처남, 매제, 부의 친구, 원고의 직원)이다.

2) 상법이 2001. 7. 24. 개정되어 주식회사 설립에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0

3) 국세청은 2014. 6. 23.부터 명의신탁주식의 정상적 환원을 통한 원활한 기업경영과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의 절차 없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, 자문위원회 심의 등 간편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해 주는 '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'를 시행하고 있다.

4) 원고는 2014년 6월경 [redacted]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제도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받았다. 원고는 위 제도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받기 위하여 2014. 11. 26., 2014. 11. 27. D, E, F, G, H, I로부터 "이 사건 회사 설립 과정에서 명의신탁 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,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하여 준다."는 내용의 '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'와 "1995년 6월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이 되었으나,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."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.

5) 원고는 2014. 12. 2. 위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서대문세무서장에게 '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'을 하였고, 서대문세무서장은 2015년 2월경 "원고가 제출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"는 통보를 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4 내지 7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, 위 1. 나.항과 같은 주주명부의 변경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D, E, F, G, H, I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원고 앞으로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0

회복한 것으로 보인다.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'취득'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

1)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회사 설립에 발기인 수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, 원고가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D 등에게 주주 명의 사용을 부탁할 필요가 있었다.

2) D 등은 원고에게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. D 등이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라면 쉽게 주식명의신탁해지약정서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.

3)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통보를 하였다.

4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국현

판사 김춘화

판사 이광열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1-10

관계 법령

▣ 구 지방세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7조(납세의무자 등)

① 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, 입목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회원권, 승마회원권, 콘도미니엄 회원권,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(이하 이 장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.

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(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)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▣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5. 12. 31.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1조(과점주주의 취득 등)

① 법인의 과점주주(「지방세기본법」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

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(이하 이 조에서 "주식등의 비율"이라 한다)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. 다만,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끝.